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명 및 조례 근거 조항명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로, “제21조”를 “제19조”로,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를 “구미시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요청서”를 “기술자문요청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 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 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 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u>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u> 제1조(목적)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령」----- 제19조----- ----- ----- 구미 시기술자문위원회----- ----- -----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 -----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제7조(자문요청) ① 관계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u>설계자문요청서</u>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③ (생략)	<u>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u> 제7조(자문요청) ① ----- ----- ----- <u>기술자문요청서</u>- ----- -----.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 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관 실·과		도 로 과
입 안 자	과 장	박 희 철
	계 장	이 종 우
	담당자	이 종 구 (480-5464)